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3년 3월 8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3년 3월 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03. 3. 13) 상정
- 제1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03. 3. 13)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세정과장 박 명 호)

가. 제안이유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자동차세 감면사항 조정과 노인복지시설로의 감면 확대 및 문화재보호법제42조제1항 규정에 의한 문화재에 대한 감면 조정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국가유공자 및 유족, 장애인소유의 자동차세에 대한 감면시 단서조항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를 삭제함.(안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0%경감사항을 유료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복지시설로 확대 조정함. (안 제6조)
-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하던 것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조정함.(안 제9조제2항)
-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조정함
 -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조정함(안 제10조, 제16조)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을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조정함. (안 제12조)
 -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을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조정함.(안 제17조)부천시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전문가 2분의1이상을 3분의2이상으로 조정함. (안 제4조제2항)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input type="radio"/> 없음	<input type="radio"/>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없음

나. 반대토론

없음

5. 심사결과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호
의결연월일	2003.3.19 (제103회)

제출년월일 : 2003. 3. *l*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자동차세 감면사항 조정과 노인복지시설로의 감면 확대 및 문화재보호법제42조제1항 규정에 의한 문화재에 대한 감면 조정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국가유공자 및 유족, 장애인소유의 자동차세에 대한 감면시 단서조항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를 삭제함. (안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0%경감사항을 유료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복지시설로 확대조정함. (안 제6조)
-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하던 것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

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조정함.

(안 제9조 제2항)

○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조정함.

-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조정함. (안 제10조, 제16조)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을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조정함. (안 제12조)

-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을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조정함.

(안 제17조)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단서를 삭제하고, 제3조제1항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중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하고, 제9조제2항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으로 하고, 제12조제1항중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26조"를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로 한다.

제17조중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채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생략)</p> <p>②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p> <p><u>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u></p> <p>1. ~ 4. (생략)</p> <p>③ (생략)</p>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단서 삭제></p> <p>1. ~ 4.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p>	<p>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 -----</p>
<p>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① (생략) ②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p>	<p>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① (현행과 같음) ② -----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p>
<p>제10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②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 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p>	<p>제10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p>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농어촌특산물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물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u>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u>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② 및 ③ (생략)</p>	<p>제12조(농어촌특산물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① ----- ----- ----- <u>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u> 및 <u>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u> ----- ----- ----- ----- ----- ----- ----- ----- ----- ----- ----- ----- ----- ----- -----</p> <p>② 및 ③ (현행과 같음)</p>
<p>제16조(사권제한 토지등에 대한 감면)① <u>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u>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와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16조(사권제한 토지등에 대한 감면)① <u>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u>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 ----- ----- ----- -----</p>

현 행	개 정 안
<p>②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그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p>	<p>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 ----- ----- ----- ----- ----- -----.</p>
<p>제17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u>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u>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 1. 및 2. (생략)</p>	<p>제17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u>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u>----- ----- ----- ----- -----.</p> <p>1. 및 2. (현행과 같음)</p>